

適格심사 落札制 도입

百億 이상 工事

契約법률 施行令 제정

協會의견 貫徹 設計 변경 額數 조정

○ 7월 6일부터 1백억원 이상공사에 적용되는 계약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1.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액의 10%로 단축한다. 2.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액의 10%로 단축한다. 3.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액의 10%로 단축한다. 4.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액의 10%로 단축한다. 5.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액의 10%로 단축한다. 6.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액의 10%로 단축한다. 7.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액의 10%로 단축한다. 8.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액의 10%로 단축한다. 9.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액의 10%로 단축한다. 10.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계약금액의 10%로 단축한다.

建設市場 개방 對應 方案 마련

工事 完成 보증제 등

○ 建設市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1. 工事 完成 보증제 도입, 2. 工事 完成 보증제 도입, 3. 工事 完成 보증제 도입, 4. 工事 完成 보증제 도입, 5. 工事 完成 보증제 도입, 6. 工事 完成 보증제 도입, 7. 工事 完成 보증제 도입, 8. 工事 完成 보증제 도입, 9. 工事 完成 보증제 도입, 10. 工事 完成 보증제 도입.

만남의 漁港 새 漁業 펼쳐

地域 活性化의 積極

○ 漁港의 活性化를 위하여, 1. 漁業 發展, 2. 漁業 發展, 3. 漁業 發展, 4. 漁業 發展, 5. 漁業 發展, 6. 漁業 發展, 7. 漁業 發展, 8. 漁業 發展, 9. 漁業 發展, 10. 漁業 發展.

先進의 視察 申請 접수

○ 先進의 視察를 위하여, 1. 先進의 視察, 2. 先進의 視察, 3. 先進의 視察, 4. 先進의 視察, 5. 先進의 視察, 6. 先進의 視察, 7. 先進의 視察, 8. 先進의 視察, 9. 先進의 視察, 10. 先進의 視察.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내년에 實態 조사 나서

○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을 위하여, 1.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2.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3.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4.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5.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6.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7.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8.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9.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10. 沿岸해역도 用途 지정.

最新技術 개발로

漁港漁村 發展에

寄與하겠습니다

(株) 世一 綜合技術公社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1洞 65-106號 中央빌딩 TEL: 831-4411~6, FAX: 831-4417

經營陣 및 技術者

- | | |
|---------------|-------|
| 代表理事 社長 | 朱 宰 旭 |
| 技術士(港灣 및 海岸) | |
| 會長 | 李 根 壹 |
| 技術士(道路 및 空港) | |
| 副社長 | 周 海 鍾 |
| 副社長 | 李 龍 宰 |
| 技術士(上, 下水道) | |
| 專務理事(港灣 및 海岸) | 李 鎬 淳 |
| 常務理事 | |
| 技術士(土木施工) | 崔 圭 明 |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69)

漁具倉庫用地

어업종류	통수 (N)	어구의 점유 면적 (Vp)	쌓아올릴 수 있는단수 (S)	($\nu = Vp/S$)	어구창고 사용기간
저인망	30	20m ²	3	6.7	7~8월
자망	100	20	4	5.0	11~2
소형정치망	30	40	1	40.1	12~3

〈표1〉 어구창고의 이용

는 어구의 통수(어업종류별로)
iv) 어구 수납시에 쌓아올릴 수 있는 단수
v) 어구창고를 이용하는 기간(어업종류별로)

② 각 어구마다 1통당의 소요면적을 산정한다.
1통당 소요면적을 ν 로하면 ν 는 다음식으로 구할 수 있다.
 $\nu = Vp/S$

다만, Vp:1통당의 어구 점유 면적 S:수납시에 쌓아올릴 수 있는 단수

③ 각종 어업종류별로 소요면적을 산정한다.
각종 어업종류별 어구수납소요면적을 A로하면 A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A = N \times \nu / r$

다만, N : 각 어업종류별로 수납해야 할 어구의 통수
 ν : 어구의 1통당 소요면적
r : 면적 유효율(0.75정도)

④ 매월 어구수납 소요면적을 누계하고 그 면적이 최대가 되는 달의 값을 창고의 소요면적으로 한다.

⑤ 창고의 소요면적을 건폐율로 나누어서 창고용지의 면적을 결정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어구창고 소요면적은 2,267m²로 한다.

나누어서 창고용지의 면적을 결정한다

어업종류	통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인망	30	-	-	-	-	-	-	-	268	268	-	-	-
자망	100	667	667	-	-	-	-	-	-	-	-	667	667
소형정치망	30	1,600	1,600	1,600	-	-	-	-	-	-	-	-	1,600
계		2,267	2,267	1,600	-	-	-	268	268	-	-	667	2,267

〈표1〉 어구창고의 이용

수산창고의 배치
수산창고 용지 중 제품창고 용지는 그 성질에서 제1선 용지보다는 오히려 어항배후의 주요도로에 가까운 수중에 편리한 제2선용지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활어창고 용지는 급수·배수의 양이 많으므로 활어를 직접 해안에서 양육하는 일이 많은 것 등을 고려하여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漁具倉庫用地 개설

어구창고 용지는 어항기에 어구 자체등을 보관하는 어구창고를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다.

어구는 어업자가 각각 자신이 수납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업집락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구가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납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이와함께 관리에도 곤란한 점이 많으며 도난의 위험이 있으며 다른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어구창고는 어구를 보관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어구창고의 규모와 용지의 소요면적을 산정할 때는 다음 차례에 따라 산정한다.

①창고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구에 대한 값을 여러가지로 조사한다. 조사할 사항으로는

- i) 당해 어항에서 사용되는 어법과 각각에 사용되는 어구
- ii) 각 어구마다 1통당 어구의 점유면적
- iii) 당해 어항에 있어서 사용되

는 어구의 통수(어업종류별로)

iv) 어구 수납시에 쌓아올릴 수 있는 단수
v) 어구창고를 이용하는 기간(어업종류별로)

② 각 어구마다 1통당의 소요면적을 산정한다.
1통당 소요면적을 ν 로하면 ν 는 다음식으로 구할 수 있다.
 $\nu = Vp/S$

다만, Vp:1통당의 어구 점유 면적 S:수납시에 쌓아올릴 수 있는 단수

③ 각종 어업종류별로 소요면적을 산정한다.
각종 어업종류별 어구수납소요면적을 A로하면 A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A = N \times \nu / r$

다만, N : 각 어업종류별로 수납해야 할 어구의 통수
 ν : 어구의 1통당 소요면적
r : 면적 유효율(0.75정도)

④ 매월 어구수납 소요면적을 누계하고 그 면적이 최대가 되는 달의 값을 창고의 소요면적으로 한다.

⑤ 창고의 소요면적을 건폐율로 나누어서 창고용지의 면적을 결정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어구창고 소요면적은 2,267m²로 한다.

나누어서 창고용지의 면적을 결정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어구창고 소요면적은 2,267m²로 한다.

나누어서 창고용지의 면적을 결정한다

안 질 환 자가 치료는 금물 전문의 진단 받도록



건·강·하·개·삽·시·다

환자가 건강하면 2~3주 후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질환의 증상의 심하고 2차 세균성 감염의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병원의 방문하여 부실과적 흡인제나 포도막염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전신 투약하는 게 좋다.

안대를 하면 이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건강하면 2~3주 후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질환의 증상의 심하고 2차 세균성 감염의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병원의 방문하여 부실과적 흡인제나 포도막염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전신 투약하는 게 좋다.

안대를 하면 이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어음·수표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어음·수표 멸실되어도 제권판결받아 권리행사 가능

어음·수표 양도시 유의사항
○ 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에 의하게 된다.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 방법을 말한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 이름과 도장을 찍어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 어음을 받을 자(피배서인)는 배서인에 의해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고 백지인 상태로 그냥 양도(백지식 배서)될 수도 있다.

○ 어음에 배서한다는 것은 마치 어음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비록 발행인에게 신용이 없거나 돈이 없다 하여도 유력자가 배서하면 그 어음의 신용은 높아지는 것이다.

○ 수표도 어음에서와 같은 배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표는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어음의 배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수표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지급인(보통은행)은 배서할 수 없고,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이 있다.

○ 소지인 출급식 수표 또는 무기명식 수표(수표에 위 수표 금액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뜻의 문구가 있는 수표)는 양도함에 있어 배서할 필요가 없고 수표를 인도하면 된다. 보통 은행에서 이들 수표에도 전화번호 또는 주소와 이름을 쓰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수표의 입금경로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 법률상 필요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 기명식 수표 또는 지시식 수표(수표에 위 수표금액을 ○○에게 또는 ○○○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라는 뜻의 문구가 있는 수표)는 어음과 같이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다.

어음·수표 사고시의 조치
○ 어음의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하는 것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던지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어음·수표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어음·수표 멸실되어도 제권판결받아 권리행사 가능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어음·수표의 부도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인감누락, 서명·기명누락, 인감불분명, 정정인 누락·상이, 지시금지, 횡선조건 위배), 사고계접수(분실·도난·피사취),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제시기일 미달은 수표의 경우는 제외), 인감·서명상이, 지급지 상이, 법에 의한 지급제한 등이 있다.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부도어음·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 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배서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을 상실한다.

형사책임
○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특히 사기죄가 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표를 받아두었다고 하여 안심하여서는 안된다. 소지인이 법에 정한 10일 이내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수표라고 하는 선일자(先日字)수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어음·수표 사고시의 조치
○ 어음의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하는 것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던지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생활법률

생활법률